

규장각 소장 ‘先生案’의 현황과 자료적 가치*

나 영 훈**

1. 머리말
2. 선생안의 현황과 분류
 - 1) 경관직(동반)
 - 2) 경관직(서반)
 - 3) 외관직
 - 4) 잡직
 - 5) 신관제
 - 6) 향리
 - 7) 기타
3. 선생안의 수록 내용과 자료의 특성
4. 선생안의 자료적 가치
5. 맺음말

1. 머리말

‘先生案’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각 관서나 향교 등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자료이다.¹⁾ ‘선생안’은 양반 관원들의 명부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관원만이 아니라 향리나 裸負商과 같은 양반이 아닌 계층에도 발견되는 자료이다. 선생안과 유사한 인명록으로는 ‘題名錄’과 ‘官案’·‘政案’·‘清選考’·‘政錄’ 등 다양한 명칭의 자료가 있다. 이들 자료는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각 표제에 따라 그 성격의 차이를 조금 확인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2030759)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 구완희, 1982 「선생안을 통해 본 조선후기의 수령」 『복현사림』 4.

우선 선생안은 주로 하나의 관서 혹은 관직에 대한 인명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물론 앞서의 사례와 같이 하층계층에도 선생안의 작성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드물게 남아 있다. 따라서 선생안이라 하면 좁게는 양반관원의 명단이지만, 넓게 보면 신분에 관계없이 직임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으로 볼 수 있다. 한편 '題名錄' 혹은 '題名記'는 선생안과 유사한 명단으로서 대부분 양반관료들의 명단이 남아 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많지 않고, '題名記'의 이름으로 서문만이 다수 확인된다.²⁾

'官案'은 선생안과 유사한 명단이지만, 주로 양반관료의 명부를 정리한 선생안과 달리 대부분 이서나 향리, 혹은 官奴 등 하층계급의 명부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규장각 소장본으로는 『官奴婢官案(규27615)』, 『雇馬夫官案(규27498)』, 『使令官案(규27617)』 등이 확인되는데, 관노와 고마부, 사령 등 직역이 낮은 계층의 명부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부의 경우에는 양반관원들의 명부를 관안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모든 관안이 하층계층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체로 관안이라 하면 선생안보다 낮은 계층의 인원에 대한 명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政案'은 주로 고려시대의 인사관리부로 고문서 형태로 남아 있고, 한 인물을 중심으로 기술한 사료이다.³⁾ 조선시대의 '정안' 자료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淸選考』나 『名世叢考』, 『政錄』, 『政事冊』과 같은 자료도 있다. 이들 자료는 하나의 관서가 아닌 여러 관서나 관직의 명부를 모아둔 자료이다. 이는 대부분 양반관료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淸選고』나 『명세총고』는 '淸要職'으로 알려진 관원의 명단을 다수 수록하고 있고, 『정록』은 다양한 하위 관서의 관원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한편, 『政事冊』은 영조대부터 고종대까지의 도목정사 내역을 수록한 책자이다.

사실 선생안이나 제명록, 관안은 현재 존재하는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단지 대체로 선생안이나 제명록은 양반관료의 명단을 지칭하며, 관

2) 구슬아, 2017 「조선시대 관청 제명기 창작의 시대적 맥락」 『국문학연구』 36; 배현숙, 2011 「조선후기의 「실록청제명기」 연구」 『서지학연구』 49.

3) 박제우, 2006 「고려 정안의 양식과 기초 자료」 『고문서연구』 28.

안은 양반이 아닌 하층계층의 명단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이들 자료를 일괄하여 모든 인명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 자료는 각 기관에 산재해 있어 현재로서는 수량 파악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자료가 확인되는 '선생안'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선생안에는 해당 직임을 맡은 인물들의 성명이 나열되어 있고, 그 인물의 전후로 해당 인물의 字나 號, 諡號, 生年과 沒年, 本貫과 거주지 등의 인적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과거급제여부나 前職과 移職 등의 관직 정보가 수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해당 인물의 인적관계망을 파악하기에 매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관로를 중심으로 기록해두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양반 관료의 관직 이동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선생안은 조선시대 중앙관제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다. 선생안을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DB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방대한 DB를 가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手記로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할 필요가 없어졌다.⁴⁾ 엑셀 등 다양한 통계처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일목요연하게 방대한 DB를 정제하여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선생안을 활용한 연구는 최근 DB를 통한 계량적 통계분석의 연구가 많아지는 가운데 각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생안을 직접 사료로 활용한 연구는 크게 4가지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우선, '曷先生案'의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 수령의 성분을 분석한 성과가 가장 많이 누적되어 있다.⁵⁾ 또한 사료가 많지 않은 지방 향리의 선생안을 통해 이들의 인적

4) 에드워드 와그너는 60년대 초창기 DB 입력 연구방식의 단초를 마련해주었고[에드워드 와그너(이훈상, 손숙경 옮김), 2007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80년대 최진옥은 『사마방목』의 입력을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최진옥, 1994 『조선시대 생원 진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엑셀을 통한 방대한 DB 연구방식에 일조하였다. 이들 연구자의 노력으로 방목 등 조선시대 인명 DB를 기반으로 한 계량적 분석 연구가 진전될 수 있었다.

5) 지방 수령과 관련한 선생안은 각 지역 선생안 다수의 성과가 존재한다. 허홍식, 1981 「설립 안동선생안」 『대구사학』 19: 구원회, 1982 「先生安을 통해 본 朝鮮後期の 守令」 『북현

관계를 연구한 성과도 산재해 있다.⁶⁾ 한편, 가문간의 결속이 높은 雜科 중인과 관련한 선생안 역시 ‘雜科榜目’ 연구와 연결하여 진행되고 있다.⁷⁾ 다만 선생안 사료 가운데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중앙관원과 관련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이다.⁸⁾ 이처럼, 다양한 선생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사림』 4: 이원균, 1985 「朝鮮後期 地方武官職의 交遞實態: 《慶尙左水營先生案》과 《多大浦先生案》의 分析」 『역사와세계』 9: 이원균, 1984 「朝鮮時代의 水使와 僉使의 交遞實態」 『논문집』 33: 황정하, 1992 「朝鮮時代 守令에 대한 一研究: 《淸風府先生案》을 중심으로」 『박물관보』 5: 황정하, 1993 「朝鮮時代 地方官에 對한 一研究: 《淸塘縣先生案》을 中心으로」 『향토사연구』 5: 이성인, 2003 「조선시대 富平府使의 재임실태」 『인천학연구』 2: 이성인, 2002 「조선시대 인천부사의 임용실태」 『博物館誌(인하대)」 4: 김의환, 2011 「조선시대 丹陽郡守의 前歷과 在任 實態: 『丹陽郡先生案』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4: 박정민, 2018 「함경도 『觀察使先生案』의 명단 검토와 재임 실태」 『전북사학』 52: 권기중, 2018 「조선시대 임실현 수령의 출신성분과 재임실태」 『역사와실학』 67 등.

- 6) 이훈상, 1990 「朝鮮後期 吏胥集團과 武任集團의 組織 運營과 그 特性: 全羅道 南原의 各種 先生案」 『한국학논집』 17: 이훈상, 1998 「朝鮮後期 上級 地方 行政 體制에 있어서 身分 집단에 기초한 運營 構造와 行政 實務 集團의 出身 지역의 偏在化」 『호남문화연구』 26: 이훈상, 2017 「조선후기 충청도의 영리(營吏)와 향리(鄉吏), 그리고 이들의 기록물: 충청도 감영의 영방(營房)과 향리 사회의 연망에 대한 기초 연구」 『고문서연구』 50: 권기중, 2018 「조선후기 전라도 임실현 향리층의 존재양태: 『운수연방선생안(雲水掾房先生案)』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2: 권기중, 2018 「향리 『선생안』을 통해 본 조선후기 강원도 낭천현의 향리 사회」 『조선시대사학보』 85 등.
- 7) 김양수, 1998 「조선후기 중인의 경기지방관 진출: 수령안과 내침의, 의약동참선생안을 중심으로」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 1: 김양수, 1997 「조선 후기 中人의 지방관 진출: 경기와 충청도 守令先生案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76: 이규근, 1997 「조선후기 內醫院 醫官 연구: 內醫先生案의 분석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규근, 2000 「조선후기 內鍼醫 연구: 『內鍼醫先生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집』 20: 김두현, 2004 「『寫字廳先生案』과 조선시대 寫字官의 신분」 『고문서연구』 24: 김두현, 2004 「자료 『증보사자청선생안』의 편찬과 제시」 『대동사학』 3: 박훈평, 2018 「조선후기 의약동참과 내침의 신분 연구」 『장서각』 39 등.
- 8) 임학성, 2011 「조선 후기 漢城府 四學 敎官의 성분」 『한국학연구』 25: 이충규, 2011 「肇慶廟 運營과 先生案」,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근호, 2009 「조선시대 吏曹銓郎의 인사 실태」 『한국학논총』 31: 강성득, 2009 「17~18세기 승정원 주서직의 인사실태」 『한국학논총』 31: 김선영, 2010 「17세기 예문관의 한천제 운영」,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영훈, 2017 「17~18세기 司僕寺 官職 운영의 실제와 참상관의 官路」 『장서각』 38: 나영훈, 2017 「17~18세기 典牲署의 官職 운영과 參下官의 官路」 『동양고전연구』 69: 김동근, 2017 「조선 후기 宗簿寺 郎廳의 실태 및 운영체계: 장서각 소장 『宗簿寺郎廳先生案』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9: 김동근, 2018 「조선 후기 宗簿寺 『提調』의 실태 및 운영체계」 『장서각』

개별 선생안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선생안의 자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선생안 자료가 너무 산재되어 있어 접근이 어려웠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즉, 기본적인 자료의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선생안 연구를 방해하는 요인의 하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선생안' 자료가 현재 몇 종이나 남아 있으며 그 안에 수록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해명을 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는 우선 규장각 소장본을 대상으로 선생안의 현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여 규장각 소장본만의 특성과 선생안 사료가 지닌 가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선생안이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어 이들 사료를 한 번에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따르고, 또 장서각 소장본은 기왕에 조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⁹⁾ 더욱이 규장각은 가장 많은 수량의 선생안을 보유한 기관이며, 필자의 판단으로 핵심적인 중앙관서의 선생안을 대부분 유일본으로 소장하여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황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 개별 선생안에 대한 치밀하고도 분석적인 성과가 누적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생안의 현황과 분류

규장각에 소장된 표제가 '선생안'으로 확인되는 사료는 모두 80종이다. 규장각에 소장된 선생안을 자료 성격에 따라 官人과 非官人으로 나누고, 관인 내에서는 『經國大典』에 포함된 관제와 甲午改革 전후의 新官制로 나누었다. 또한 『경국대전』의 관제는 京官職과 外官職, 雜職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39) 김충현, 2018 「『明陵先生案』을 중심으로 본 조선후기 陵官의 변화와 운용」 『장서각』 39 등.

9) 이남욱, 2017 「장서각 소장 先生案의 현황과 자료적 가치」 『동양고전연구』 69.

〈표 1〉 규장각 소장 선생안의 현황과 분류

구분	경국대전 체제				新官制	비관인		합계
	京官職		外官職	雜職		향리	기타	
	동반	서반	동반	(중인)				
선생안	39	10	8	7	9	3	4	80
비율(%)	48.8	12.5	10	8.7	11.2	3.8	5	100

규장각 소장 선생안은 대부분 『경국대전』에 기재된 관서와 관직을 중심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갑오개혁 전후의 新官制를 포함하면 73건이 관인과 관련된 선생안이다. 이는 규장각에 소장된 선생안의 자료적 성격이 '관원의 명단에 가깝다는 것을 알려준다. 관인이 아닌 경우는 단 7건으로 향리 선생안 3건, 독서당과 기로소 관련 선생안이 4건이다. 그런데 독서당과 기로소 인원은 현직 관료는 아니었지만 모두 전임 관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넓게는 관원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3건의 향리 선생안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규장각 소장 선생안은 관서와 관직, 즉 관원을 정리한 명단임을 알 수 있다. 이제 규장각에 소장된 선생안을 위의 분류에 따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1) 경관직(동반)

규장각 소장 선생안의 대표적인 성격 가운데 하나는 다른 기관들보다 중앙관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관서의 선생안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조선시대 핵심 권력기구였던 ①議政府와 ②弘文館·藝文館·③司憲府·④承政院은 물론, 행정을 총괄했던 六曹 가운데 ⑤吏曹와 戶曹, 그리고 ⑥四學과 ⑦여러 행정관서 등 주요한 중앙 관서·관직의 선생안을 소장하고 있다. 이들 동반 경관직의 선생안은 39종으로 절반에 가깝다.

〈표 2〉 의정부 관련 선생안

구분	서명	청구기호	책권수	관서	관직	수록시기	인명
1	三公先生案	奎 16001	1册(34張)	의정부	삼의정	국초~1886	348
2	三公先生案	奎 16002	1册(34張)	의정부	삼의정	국초~1889	359
3	三公先生案	奎 16003	1册(28張)	의정부	삼의정	국초~영조초	312

4	三公先生案	奎 16004	1册(22張)	의정부	삼의정	국초~순조	336
5	西壁先生案	奎 16012	1册(34張)	의정부	좌참찬/우참찬	태조~고종	536
6	西壁先生案	奎 16013	1册(23張)	의정부	좌참찬/우참찬	태조~순조	376
7	舍人先生案	奎 16007	1册(38張)	의정부	사인	1403~1891	554
8	舍人先生案	奎 16008	1册(35張)	의정부	사인	1403~1891	936
9	檢詳先生案	奎 16009-v.1-2	2册	의정부	검상	1412~1891	287
10	司錄先生案	奎 16015	1册(15張)	의정부	사록	선조~고종	238
11	議政府郎廳先生案	奎 16010	1册(3張)	의정부	낭청	1883~1894	42

* 각 <표>에 수록한 인명수는 전체 면수와 각 면의 행수를 고려해 필자가 예상한 것으로 정확한 인명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우선, 의정부와 관련된 선생안을 살펴보면 위의 <표 2>와 같다. 규장각에는 조선시대 핵심 권력기구인 '의정부'와 관련한 선생안이 11종이나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권력의 최상층이었던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명단인 『三公先生案』만 4종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이들 선생안은 조선초기부터 말기까지, 500년에 걸친 의정부 삼의정의 명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권력의 최상층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삼의정의 인사이동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지만,¹⁰⁾ 이 연구는 연대기를 토대로 한 정리라는 점에서 선생안과의 대조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삼의정의 경우 연대기에 누락되지는 않았겠지만, 이들의 명단만이 아닌 전후 관직 이력 등의 정보는 불명확했던 것도 사실이다. 『삼공선생안』을 통해 권력의 최상층에 있던 삼정승의 官路를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 선생안은 『삼공선생안』뿐 아니라, 『西壁先生案』도 있는데, 이를 통해 그 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左·右參贊의 정보 역시 알 수 있다. 다만 『서벽선생안』은 명단만을 신고 있어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의정부 선생안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선생안은 『舍人先生案』 2종과 『檢詳先生案』이다. 여기에는 의정부의 참서관인 정4품 사인과 정5품 검상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의정부의 사인과 검상은 '清要職'의 핵심 구성원으로 알려진 관직이다.¹¹⁾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吏曹正郎이나 三司 관원과 달

10) 정만조, 2009 『朝鮮時代三公의 官歷分析: 엘리트 코-스 추적의 일단』 『한국학논총』 31.

11) 한충희, 1990 『조선초기 의정부사인, 검상의 관인적 지위』 『역사교육논집』 13.

리 이들을 단독으로 검토하거나 이들의 관로나 출신을 파악하거나, 그 가문과 통혼망은 어떻게 되는지 등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 의정부의 검상과 사인의 성분 분석을 통해 이조정랑, 삼사로 연결되는 조선시대 핵심 관원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 의정부 『司錄先生案』과 『郎廳先生案』도 있다. 이처럼, 규장각에 소장된 의정부와 관련된 선생안은 의정부 핵심 관료인 삼의정부터 참서관이자 청요직인 사인과 검상, 또 참서관인 사록(정8품)까지 의정부 모든 관직 이력자의 명단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의정부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¹²⁾

〈표 3〉 홍문관 관련 선생안

구분	서명	청구기호	책권수	관서	관직	수록시기	인명
1	文任先生案	奎 9732	1册(23張)	홍문관	제학	태조~고종	364
2	玉堂先生案	奎 9780-v.1-3	3册	홍문관	-	태종~고종	2,790
3	典翰先生案	奎 11435	1册(22張)	홍문관	전한	1865~1892	188
4	副提學先生案	奎 11495	1册(36張)	홍문관	부제학	개국~1865	576

규장각에는 국정의 핵심기구로서 홍문관과 사헌부와 같은 ‘청요직’ 관련 선생안도 포함되어 있다. 홍문관과 관련된 선생안을 살펴보면 위의 〈표 3〉과 같다. 규장각에는 홍문관과 관련된 선생안으로 『文任先生案』, 『副提學先生案』, 『典翰先生案』, 『玉堂先生案』 4종이 소장되어 있다. 홍문관은 사헌부·사간원과 함께 삼사의 하나로 불리며 대신과 국왕을 견제하여 국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관서였다.¹³⁾ 규장각에는 이러한 홍문관 관원의 명단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에는 홍문관의 주요 관직 가운데 하나인 提學의 명단을 수록한 명부인 『문임선생안』과 부제학을 수록한 『부제학선생안』, 전한을 수록한 『전한선생안』이 있다. 즉, 홍문관의 고위급 관료들에 대한 개별 명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홍문

12) 의정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대부분 조선초기의 제도 정비과정과 관원들의 성분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선생안 연구는 조선후기 관원을 실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13) 최이돈, 1986 「성종대 홍문관의 인관화 과정」 『진단학보』 61.

관은 그 예하의 직제학부터 부수찬까지의 참서관들 역시 권력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규장각에는 『옥당선생안』도 존재해서 홍문관의 참서관원을 포함한 관원에 대한 명부 역시 확인할 수 있다.¹⁴⁾ 특히, 『옥당선생안』은 조선후기의 주요한 홍문관원 도합 2,700여 명의 인명이 수록된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표 4〉 사헌부 관련 선생안

구분	서명	청구기호	책권수	관서	관직	수룩시기	인명
1	憲府先生案	奎 19570의 4	1冊(22張)	사헌부	대사헌/집의/장령/지평	1657~1666	387
2	霜臺先生案	奎 19570-3	1冊(29張)	사헌부	대사헌/집의/장령/지평	1649~1770	585
3	司憲府新修先生案	奎 19570-1	1冊(8張)	사헌부	집의/장령/지평	1797~1826	96
4	大司憲先生案	奎 19570-2	1冊(15張)	사헌부	대사헌	1812~1892	248

사헌부 관련 선생안은 위의 〈표 4〉에서 확인되듯이, 도합 4종이 있다. 사헌부는 홍문관과 더불어 삼사의 하나로서 '청요직'의 중요한 관서로 여겼다. 따라서 여기에 누가 임용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정치세력 연구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사헌부에는 종2품의 대사헌을 필두로 종3품 집의, 정4품 장령, 정5품 지평, 정6품 감찰로 구성되어 있는데,¹⁵⁾ 감찰을 제외한 집의·장령·지평은 '청요직'에 해당하였다.

『憲府先生案』에는 1657년부터 1666년까지, 즉 효종에서 현종 연간의 대사헌부터 지평까지 청요직에 속한 관원 387명의 명부가 수록되어 있다. 아마 앞뒤로 명부가 더 있었을 것인데 현재 전하는 것은 1책 22장이 전부이다. 효종부터 현종 연間は 특히 효종 집권 이후의 청서파 서인계와 남인계의 대립이 정립된 봉당정치기의 중요한 시점이다.¹⁶⁾ 이 시기 대간의 하나였던 사헌부 관원에 대한

14) 그간 『홍문록』과 관련한 연구는 있었지만(최승희, 1978 「홍문록고」 『대구사학』 15) 이를 『옥당선생안』과 비교·검토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15) 『經國大典』 「吏典」 경관직조.

16) 한국역사연구회, 2003 『조선중기 정치와 정책』, 아카넷; 이태진, 1985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일목요연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霜臺先生案』은 『헌부선생안』과 동일한 관원들을 수록하면서도 효종대부터 영조말까지의 인사를 보다 폭넓게 수록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효종~영조대에 이르는 시기에 정치세력의 한 축을 이루었던 사헌부 관원의 부침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司憲府新修先生案』은 정조말년에서 순조연간 사이의 사헌부 명단으로 이 역시 집의부터 지평까지 ‘청요직’ 사헌부 관원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霜臺先生案』을 이어서 새롭게 명단을 추가해 정리했다는 의미에서 ‘新修’라고 칭한 것이다. 이들 자료를 연결하여 파악하면 정치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영조말년에서 정조 연간의 사헌부선생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영조연간 通淸權 효과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¹⁷⁾ 한편, 『大司憲先生案』은 순조연간부터 고종대까지 19세기의 대사헌의 명부를 정리한 것이다. 자료적으로 『大司憲先生案』을 제외한 3종의 선생안은 조선후기 정치사와 삼사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요긴한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승정원 관련 선생안

구분	서명	청구기호	책권수	관서	관직	수룩시기	인명
1	銀臺先生案	奎 9727-v.1-3	3冊	승정원	승지	국초~1894	2,352
2	承旨先生案	奎 9731-v.1-2	2冊	승정원	승지	1868~1894	563
3	堂后先生案	奎 9733-v.1-2	2冊	승정원	주서	1401~고종	784

위의 〈표 5〉에서 보이듯이 규장각에는 다수의 승정원 관련 선생안도 소장되어 있다.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구로서 특히 六承旨를 중심으로 국가의 주요한 사안을 국왕에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는 직임이었다. 승정원에는 승지와 함께 정7품의 注書도 배정되었는데, 주서는 참서관이지만 ‘청요직’으로서 문과에 급제한

17) 이와 관련하여 김성윤, 1995 「정조대의 문반직 운영과 정치구조의 변화」 『부대사학』 19를 참조할 것.

정치엘리트들이 初入仕로 거치는 중요한 관직이었다. 승정원은 관서의 위상과 중요성 때문에 기구의 성격뿐 아니라 관원에 대해서도 다수 연구가 진행되었다.¹⁸⁾

규장각에는 『銀臺先生案』과 『承旨先生案』, 『堂后先生案』 등의 3종이 존재하는데, 앞의 2종은 승지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으며, 뒤의 선생안은 당후, 즉 주서의 명부를 수록하고 있다. 정7품의 관직인 주서를 별도로 기록해 선생안을 작성한 것은 그만큼 주서의 직임이 중요했고, 이들 사이의 정치적 연대가 존재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이들 선생안은 국초부터 고종대까지 수록되어 있어 여타 선생안과 달리 조선초기부터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당후선생안』은 숙종말부터 영조대까지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감안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행히 해당 시기의 『承政院日記』에는 주서의 명단이 잘 기록되어 있어 이와 함께 연구한다면 승정원 주서에 관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표 6〉 이조·호조 관련 선생안

구분	서명	청구기호	책권수	관서	관직	수록시기	인명
1	銓郎先生案	奎 16011-v.1-3	3冊	이조	정랑/좌랑	중종~고종	1,412
2	參議先生案	奎 18173	1冊(67張)	호조	참의	1549~1894	1,208
3	判書先生案	奎 18172	1冊(22張)	호조	판서	1549~1894	395
4	郎廳先生案	奎 18171	1冊(83張)	호조	정랑/좌랑	1549~1827	2,538
5	參判先生案	奎 18170	1冊(66張)	호조	참판	1457~1894	1,224
6	堂上先生案	奎 18169-2	1冊(125張)	호조	판서/참판/참의	1546~1814	1,944
7	堂上先生案	奎 18169-1	1冊(11張)	호조	판서/참판/참의	1549~1694	774
8	堂上先生案	奎 18165	1冊(15張)	호조	판서/참판/참의	1814~1830	125
9	堂上先生案	奎 18167	1冊(15張)	호조	판서/참판/참의	1814~1830	125

조선시대 행정의 중추는 6조 아문이라 할 수 있다. 위의 〈표 6〉은 6조 가운데 문관의 인선을 담당한 吏曹과 재정을 담당한 戶曹의 선생안의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호조 관련 선생안은 총 8종으로 의정부 다음으로 많은 수요가 현존

18) 강성득, 2010 「효종대 승정원 승지직의 인사운영」 『사학연구』 100; 강성득, 2009 「17~18세기 승정원 주서직의 인사실태」 『한국학논총』 31.

한다. 호조 관련 선생안은 주로 호조의 당상관인 판서와 참판, 참의의 명단을 정리한 선생안이 7종 남아 있으며, 정랑과 좌랑의 선생안이 1종 남아 있다. 『堂上先生案』은 총 4종이 있는데, 여기에는 판서와 참판·참의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규18169-1>은 중종대인 1549년부터 숙종조인 1649년까지 774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규18169-2>는 동일한 중종대부터 순조대인 1814년까지 1,944명이 수록되어 있다. 즉, <규18169-2>가 앞선 자료를 포함하여 조선 전반에 걸친 호조 당상관의 명부를 수록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어 <규18165>와 <규18167>은 1814년부터 1830년까지 <규18169-2>를 이어 호조 당상관을 기재하였다. 이 두 본은 동일본이다. 『判書先生案』과 『參判先生案』, 『參議先生案』은 호조의 당상 3원을 각각 기록한 것이다. 앞의 『당상선생안』보다 후대인 1894년까지 관원 정보를 수록했다는 점에서 훨씬 많은 인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자료를 비교하면 호조의 당상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다.

『郎廳先生案』은 호조의 정랑과 좌랑 2,538명을 수록한 명부이다. 6조의 낭청은 이조·예조·병조와 호조·형조·공조가 출신에 따라 다른 관로를 걷고 있음이 최근 확인되었다.¹⁹⁾ 즉, 이조와 예조·병조는 문과 출신들이 주로 진출하였고, 호조와 형조·공조는 문음 출신들이 주로 진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호조의 정랑과 좌랑을 수록한 『낭청선생안』은 문음 출신 낭청의 관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전랑선생안』은 이조의 정랑과 좌랑의 명부이다. 이조 낭청은 문과 출신이 진출하는 '청요직' 관로의 하나였다. 이조의 전랑은 그 중요성으로 기존 성과가 존재한다.²⁰⁾ 이조전랑은 앞서 사헌부와 홍문관 등 주요한 청요직 관직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이들의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문과 출신이 아닌 호조 낭청과의 비교를 통해 6조 낭청 사이의 상관관계나 행정체계 등 제도적 차원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한편으로 장서각에 소장된 예조의 낭청선생안과도 좋은 비교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²¹⁾

19) 나영훈, 2017 『17~18세기 사복시 관직 운영의 실제와 참상관의 관로』 『장서각』 38.

20) 이근호, 2009 『조선시대 이조전랑의 인사 실태』 『한국학논총』 31.

21) 『예조낭청선생안(장서각본, K2-567)』.

〈표 7〉 사학(四學) 관련 선생안

구분	서명	청구기호	책권수	관서	관직	수록시기	인명
1	東學兼教授先生案	奎 9776-v.1-2	2册	동학	겸교수	1661~1894	534
2	西學先生案	奎 9750-v.1-2	2册	서학	겸교수/훈도	1594~1893	757
3	中學兼教授先生案	奎 9754-v.1-2	2册	중학	겸교수	1654~1894	686

규장각 소장본에는 四學 가운데 東學과 西學·中學의 선생안이 포함되어 있다. 남학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조선시대 주요 교육기관의 하나인 '四部學堂'의 교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학 교관의 성분에 대해서는 『中學兼教授先生案』의 분석을 통해 검토된 바가 있다.²²⁾ 이와 함께 동학과 서학의 교관 성분까지 검토된다면 조선시대 사학의 운영에 대한 실증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표 8〉 기타 경관서 관련 선생안

구분	서명	청구기호	책권수	관서	관직	수록시기	인명
1	太倉先生案	奎 18168의 2	1册(61張)	광흥창	수/령/주부/직장/봉사	1793~1894	595
2	太倉先生案	奎 18168의 1	1册(30張)	광흥창	수/주부/봉사/부봉사	1620~1800	330
3	郎廳先生案	奎 9769	1册(39張)	전생서	주부/직장/봉사/부봉사/참봉	1600~1797	507
4	郎官先生案	奎 19569	1册(3張)	한성부	낭관	1898~1902	33
5	糧餉郎廳先生案	奎 18166	1册(21張)	양향청	낭청	1672~1882	244

규장각 소장본은 대부분 '청요직'과 관련된 관서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편으로 청요직이 아닌 廣興倉과 典牲署의 선생안도 확인된다. 『太倉先生案』은 2권이 존재하는데, 광흥창의 守·수·主簿 등 참상관과 直長·奉事·副奉事 등 참하관이 수록되어 있다. 1권에는 1620년부터 1800년까지, 17~18세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2권은 1793년부터 1894년 갑오개혁까지 19세기의 관원이 포함되어 있다. 『郎廳先生案』은 전생서의 관원들을 수록하고 있다. 전생서의 장관인 중6품 주부부터

22) 임학성, 2011 「조선후기 한성부 사학 교관의 성분」 『한국학연구』 25.

참하관인 직장·봉사·부봉사·참봉이 수록되어 있다. 장관을 제외한 관원이 모두 참하관이라는 점에서 이를 분석하면 전형적인 참하관인 종7품 직장부터 종8품 봉사, 종9품 참봉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준에 이를 대상으로 한 전생서 관원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참하관의 성격을 일부 실증할 수 있었다.²³⁾

지금까지 확인된 선생안과 관련된 연구는 ‘청요직’에 집중되었던 반면, 조선시대 관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문음 관료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았다. 청요직과 달리 이들 관원의 선생안은 매우 드물게 남아 있다. 이는 ‘관인 네트워크’가 중요했던 청요직 관료들과 달리, 非청요직 관인 사이의 연대가 덜 이루어진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문음 당하관의 관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간 연구주제로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시대 관제와 관료생활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청요직만이 아닌 非청요직 관료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 두 선생안이 지닌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성부의 『郎官先生案』과 양향청의 『糧餉郎廳先生案』이 있는데 한성부 낭관은 1898년부터 1902년까지, 갑오개혁 이후의 아주 짧은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양향청 낭관선생안은 주로 호조 낭관이 겸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위의 두 선생안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중앙 관료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관직에 대한 명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경관직(서반)

〈표 9〉 경관직(서반) 선생안

구분	서명	청구기호	책권수	관서	관직	수록시기	인명
1	備邊司郎廳先生案	奎 25021	1册(67張)	비변사	낭청	광해~숙종	1,340
2	備邊司郎廳先生案	奎 16014	2册(零本)	비변사	낭청	1710~1887	1,280
3	備邊司先生案	奎 16005-v.1-5	5册	비변사	당상	선조~1870	3,340
4	宜惠郎廳先生案	奎 18163-2	1册(6張)	선혜청	낭청	1877~1894	12

23) 나영훈, 2017 「17~18세기 전생서의 관직 운영과 참하관의 관로」 『동양고전연구』 69.

5	宣惠堂上先生案	奎 18163-1	1册(5張)	선행청	당상	1877~1894	20
6	宣傳官廳先生案	奎 9730-v.1-2		선전관청	선전관	1851~1907	1288
7	感戴廳先生案	奎 9793-1	1册(19張)	별군직청	별군직	효종~1885	672
8	感戴廳先生案	奎 9793-2	1册(19張)	별군직청	별군직	효종~1885	672
9	別軍職先生案	奎 9756	1册(9張)	별군직청	별군직	효종~영조대	144
10	別軍職廳先生案	奎 9757	1册(38張)	별군직청	별군직	효종~1907	584

규장각에는 비변사와 선행청, 선전관청과 별군직청 도합 4개 관서의 선생안이 소장되어 있다. 특히 비변사와 선행청은 조선후기 새롭게 등장한 아문으로 『續大典』에 서반경관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문신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의 정치와 재정을 관할했던 핵심기구로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했다.²⁴⁾ 특히 비변사는 당상과 낭청을 대상으로 각각의 선생안이 모두 남아 있다. 『비변사선생안』은 총 5권의 분량이 남아 있는데, 선조대부터 1870년까지 비변사의 당상관 3,340여 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2종의 『비변사낭청선생안』이 있는데, <규25021>은 광해군대부터 1700년경인 숙종대까지를 수록하고, <규16014>는 1710년부터 1887년까지, 그 뒤를 이어 수록하고 있어서 2종을 모두 분석하면 광해군대부터 고종대까지의 비변사 낭청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조선후기 비변사의 당상과 낭청에 대해서는 이들 3종의 자료를 통해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 선행청과 관련된 선생안은 2종이 있는데, 『선행당상선생안』과 『선행낭청선생안』이다. 이들은 동일한 시기에 제작한 것으로 1877년에서 1894년까지 매우 한정적인 시기만을 수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행청의 구성원을 모두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선전관청선생안』은 1851년부터 1907년까지, 철종대부터 고종대까지의 선전관 1,288명을 수록하고 있어 19세기 중후반, 특히 고종대 선전관의 연구를 위해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선전관은 선초부터 존재했던 관직으로, 이전 시기의 명단이 없는 것은 아쉽다. 별군직과 관련된 선생안은 총 4종으로 다른 관서에 비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는 별군직이 지닌 특수성과 관련이 깊다.

24) 비변사 선생안과 관련해서는 이재철의 연구가 있다(이재철, 1995 『17世紀 備邊司의 運營과 性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별군직은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볼모로 갔던 봉림대군[효종]을 효종한 8장사에서 유래한 특수군이었다. 이들은 효종 즉위 이후 중요한 대우를 받았고 정조대 이후는 국왕의 소수 정예 친위조직으로 명예를 지닌 직군이었다.²⁵⁾ 무반 청직으로 여겨졌기에 선발도 까다로웠고, 이에 따라 선생안을 여러 본 만들 정도로 중요한 관직이었다.

이들 자료는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조선후기 서반 경관직의 일단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비변사와 관련된 방대한 선생안은 조선후기 핵심적인 정치조직인 비변사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선 '청요직' 관련 동반 경관직 선생안과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다.

3) 외관직

〈표 10〉 외관직 선생안

구분	서명	청구기호	책권수	관서	관직	수룩시기	인명
1	慶尙南道靈山郡邑誌及邑先生案并錄繕冊	想白 古 915.15-Y42g	1冊(16張)	영산군	수령	국초~1900	100
2	宣川邑先生案	古 4652.1-8	1冊(19張)	선천읍	수령	1454~1895	395
3	平安道龜城府使先生案	古 4652.1-7	1冊(16張)	구성부	수령	1455~1906	125
4	兎山縣先生案	古 4652.1-6	1冊(16張)	토산군	수령	1413~1895	156
5	慶州先生案	古 4652.1-3	1冊(81張)	경주부	수령등	신라~1910	360
6	先生案	奎 25018	1冊(98張)	경주부	수령등	신라~숙종	639
7	先生案	奎 25019	1冊(98張)	경주부	수령등	신라~숙종	639
8	歙谷郡邑誌及先生案	奎 10971	1冊(121張)	흡곡읍	수령		1,000

규장각 소장본의 외관직 선생안은 총 8종이다. 경상도의 경주부가 3종이 있고, 경상도 영산군, 평안도 선천군과 구성부, 강원도 흡곡군과 황해도 토산군이 1종씩 있다. 이 가운데 흡곡군과 영산군은 읍지의 부록으로 확인되는 선생안이며 나머지는 별도로 성책된 것이다. 경주부의 선생안은 다른 선생안에 비해 분량도

25) 별군직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선생안의 분석을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장필기, 1989 「조선후기 별군직의 조직과 그 활동」 『사학연구』 40).

많고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호장부터 조선시대의 부사까지 천년이 넘는 지방관의 명단을 수록한 것이다. 이는 경주가 지닌 도읍으로서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시대의 王都이자, 고려시대에도 東京으로 존재했던 경주는 중요한 상징을 지닌 지역이었다.

외관직 선생안은 대부분 조선후기부터 명단이 존재하는 경관직과 달리 조선초기부터, 심지어는 신라시기부터 수록된 경우도 있었다. 이는 각각의 해당 지역에 수령의 명부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과 같은 병란을 당하여 다수의 문적이 소실된 중앙관서와 달리 보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읍의 선생안은 별도로 작성했던 것보다 읍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중앙 관서보다 더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추후 邑誌에 수록된 邑先生案의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4) 잡직

〈표 11〉 잡직 선생안

구분	서명	청구기호	책권수	관서	관직	수룩시기	인명
1	醫科先生案	古 7606-1	1冊(71張)	-	-	1498~1870	1,251
2	三曆廳先生案	古大 5120-135	1冊(22張)	관상감	삼역관	선조~1874	344
3	雲觀先生案	古大 5120-131	3卷 3冊	관상감	관관 등	선조~1874	786
4	教誨先生案	古 4652.1-5	1冊(21張)	사역원	교회	세조~1873	400
5	籌學先生案	古 4650-164	1冊(71張)	산학청	주학	1498~1870	1,500
6	教誨廳先生案	古 4650-37	1冊(23張)	사역원	교회	선조~고종	510
7	教誨內醫計士先生案	奎 27236	1冊(89張)	-	교회/내의/계사	세조~순조	1,584

규장각 소장본의 잡직과 관련한 선생안은 모두 7종이 있다. 이는 모두 전문직 중인, 즉 잡과 출신 관료들의 선생안이다. 잡과는 일반적으로 역과·의과·율과·음양과의 4개 과목을 말하며, 전문직은 이와 함께 산학(주학)·사자관·화원 등을 포함한다. 규장각에 소장된 선생안은 의학 관련 1종, 음양과 관련 2종, 역과 관련 2종, 주학 관련 1종과 의과·역과·주학을 함께 수록한 선생안 1종이 있다. 이들 선생안을 기존의 『雜科榜目』과 연계하여 분석하면 조선후기 잡과중

인들의 관료와 인적 관계에 대해 치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²⁶⁾ 잡과 선생안은 여타 선생안과 달리 방목처럼 4조 관계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잡과 중인이 강력한 혈연적 결속을 중시하는 집단이기에 이와 같은 친족 관계를 선생안에도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선생안에는 방목에 누락된 부분도 있어 상호 교차·검토한다면 잡과 중인의 실상에 대해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 신관제

〈표 12〉 신관제 선생안

구분	서명	청구기호	책권수	관서	관직	수록시기	인명
1	內廳軍官先生案	奎 18164	1册(4張)	호위청	내청군관	고종연간	46
2	提調先生案	奎 18162	1册(1張)	친군영	제조	1884~1890	2
3	都提調先生案	奎 18161	1册(4張)	친군영	도제조	1884~1890	4
4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參議先生案	奎 18159	1册(2張)	통리고섭통 상사무아문	참의	1883~1892	30
5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督辦先生案	奎 18158	1册(1張)	통리고섭통 상사무아문	독관	1883~1892	14
6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協辦先生案	奎 18157	1册(3張)	통리고섭통 상사무아문	협관	1883~1892	30
7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主事先生案	奎 18156	1册(12張)	통리고섭통 상사무아문	주사	1883~1892	144
8	外部大臣先生案	奎 18155	1册(2張)	외부	대신	1895~1904	10
9	通信院先生案	奎 16016	1册(10張)	통신원	총관/회관/참 서관/기수 등	1900~1905	19

규장각 소장 선생안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기관에서는 찾기 힘든 고종대

26) 현재까지 알려진 잡과 중인의 분석에서 선생안을 활용한 연구가 확인되는데, 이는 잡과 방목 연구의 연장에서 나온 것이다. 예컨대 이규근은 주로 의과 중인을 분석하였고(이규근, 1997 「조선후기 內醫院 醫官 연구: 內醫先生案의 분석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규근, 2000 「조선후기 內鍼醫 연구: 「內鍼醫先生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집』 20), 김두현은 사자관을 분석하는데 선생안을 활용하였다(김두현, 2004 「『寫字廳先生案』과 조선시대 寫字官의 신분」 『고문서연구』 24; 김두현, 2004 「자료 『증보사자청 선생안』의 편찬과 제시」 『대동사학』 3). 이 외에도 산학과 관련된 중인의 분석을 위해 선생안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새롭게 개편된 관제의 선생안을 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은 해당 기구의 관원인 독관·협관·참의·주사의 선생안을 각각 소장하고 있다. 이 기구는 1882년 설치되었는데, 설치 직후부터 폐지할 때까지의 관원 명단이 실려 있다. 존속 자체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인명을 수록하진 못했다. 이와 함께 친군영과 관련한 선생안이 2종 있고, 외부대신선생안이 1종, 통신원선생안이 1종이 있는데 모두 고종대 새롭게 설치된 근대식 기구로, 존속 기간 자체가 길지 않아 적은 인명만 수록되어 있어 사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6) 향리

〈표 13〉 향리 선생안

구분	서명	청구기호	책권수	관서	관직	수록시기	인명
1	椽房先生案	古 4652.1-9	1册(8張)	후주부	-	1823	67
2	戶長先生案	古 4652.1-1	1册(53張)	경주부	호장	신라~1907	419
3	思松齋先生案	古 4652-16	1册(2張)	은진현	향교재생 / 산지기		20

규장각에는 지방 향리들의 선생안도 소장하고 있다. 후주부와 경주부, 은진현 등의 지방에서는 해당 지역의 호장이나 산지기 등 지방 원역들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본래 선생안은 관원들의 명부로 작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지방 이서나 직역을 지닌 이들의 명단은 '官案'이란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즉, 선생안이나 관안은 단순한 명칭 차이가 아닌 일종의 위계가 담긴 사료인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관안은 『官奴婢官案(규27615)』, 『使令官案(규27617)』 등 하층 계급의 경우에 주로 작성되고 있고, 선생안은 지금까지 살폈듯이 대부분 양반관료의 명단을 지칭하고 있었다. 필자의 판단으로, 향리들의 선생안도 본래는 '관안'으로 지칭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향리 선생안은 명칭을 참칭해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이들 자료의 존재로, 지역에서 향리를 직역으로 했던 인물들의 명단과 그 관계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리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²⁷⁾

27) 이에 따라, 이미 향리 연구자 가운데 다수가 선생안을 활용해 인적 관계를 탐구한 성과가

7) 기타

〈표 14〉 기타 선생안

구분	서명	청구기호	책권수	관서	관직	수록시기	인명
1	讀書堂先生案	古大 923.2-D679	1冊(33張)	독서당	-	국초~영조	328
2	國朝以後耆老所堂上先生案	奎 16006-3	1冊(56張)	기로소	-	태조~순조	565
3	湖堂先生案	奎 9929	1冊(31張)	독서당	-	세종~영조	270
4	長興鄉座目靑先生案	TK1684/4472	1冊(110張)	-	-	-	-

마지막으로 관인이 아닌 선생안 가운데, 讀書堂과 耆老所와 관련된 선생안을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은 현직 관원은 아니지만, 나이로 인해 은퇴해 기로소에 들거나, 관직 생활 가운데 국가의 배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한 독서당의 인원들로서, 전직 관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기로소에는 대부분 나이가 많은 재상급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독서당은 정치엘리트들이 잠시 공부를 위해 배려를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들은 국가 중요 인재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검토는 조선시대 정치엘리트의 파악을 위해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 선생안의 수록 내용과 자료의 특성

규장각 소장 선생안을 포함한, 일반적으로 '선생안'이란 서명으로 나온 자료는 형식이 대체로 유사하면서도 그 수록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선생안 수록 내용의 차별성보다 선생안이란 자료에 수록된 정보의 최대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선생안은 기본적으로 인명부리는 특징이 있어, 명단을 기입하고 그 명단 전후좌우에 해당 인물의 정보를 부기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물론 각 선생안의 성격에 따라 해당 인명에 관한 수록 정보는 자료마다, 또 판본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유사한 범주에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존재한다. 이는 앞서 머리말의 이훈상·권기중의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선생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① 이름, 생년 등과 같은 개인정보, ② 상관과 부친·조부·외조·처가 등의 친족정보, ③ 해당 인물의 과거 급제 여부인 출신정보, ④ 가장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는 관직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와 관직정보는 대부분의 선생안에 수록된 공통의 필수 정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선생안의 성격에 따라 가족관계와 출신정보를 수록한 판본도 있다. 개인정보와 가족정보를 '인적 정보'로 지칭하고, 출신정보와 관직정보를 '관인 정보'로 지칭하여 구분해 살펴보겠다. 아래 <표 15>는 선생안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한 인명의 최대치의 정보량이다.

<표 15> 선생안의 수록정보와 부가정보

구분	정보구분	수록정보	부가정보1	부가정보2	부가정보3
1	공통	왕대	연도		
2	인적정보	①성명	字	號	諡號
3		②생년(갑자)	몰년(갑자)		
4		③본관			
5		④거주지			
6		⑤부친명	부친관직		
7		⑥조부명	조부관직		
8		⑦증조명	증조관직		
9		⑧외조명	외조관직	외조본관	
10		⑨처부명	처부관직	처부본관	
11		관인정보	⑩출신	시험종류	시험연도
12	⑪관직명		실직		
13	⑫품계				
14	⑬전직		전직일	전직사유	
15	⑭이직		이직일	이직사유	
16	⑮재직기간				
17	⑯최고관직		특이관직		
18	⑰공신여부		왕실혼인여부		

우선 선생안에 포함된 인적정보를 살펴보겠다. 선생안에는 공통적으로 왕대를 ‘卷頭’에 기재한 경우가 많다. 이어 기본정보로 ① 성명이 대표적인 정보이며, 이와 함께 ①-2 字, ①-3 號, ①-4 諱號 정보가 부기된 경우가 있다. 특히 字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同名異人을 동일인으로 처리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② 생년이 甲子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②-2 몰년 정보가 부기된 경우도 있다. 생년 정보를 토대로 해당 인물이 몇 살에 해당 관직에 임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해당 관직에 오른 인물들의 나이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보이다.

이어 본격적인 가족 정보로 ③ 본관이 수록되어 있다. 본관은 거의 모든 선생안에 필수적으로 기입된 정보이다. 이를 통해 가문을 중심으로 그룹화 할 수 있어 어떤 가문이 해당 관직에 자주 진출했는가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예컨대 안동김씨의 19세기 관직 장악 실증이나 전주이씨의 임진왜란 이후 관직 진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 시기별 가문의 관직 부침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잡직의 경우 특정 가문의 장악력도 파악할 수 있다.²⁸⁾ 이에 따라 본관 정보는 선생안의 정보 가운데 핵심적 정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④ 거주지 정보도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드물게 확인된다.

또한 가족 정보로 ⑤ 부친, ⑥ 조부, ⑦ 증조, ⑧ 외조, ⑨ 처부 등의 4조와 장인 정보가 수록된 경우가 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선생안에는 확인이 어려운 정보이다. 이들 정보는 대부분 잡과 중인들의 선생안인 雲觀이나 醫科, 敎誨 등 관상감·내의원·사역원 선생안에 수록되어 있다.²⁹⁾ 문과 출신이나 생원진사를 거친 인물들의 경우, 선생안에 기입된 인명을 토대로 방목 정보를 추가하면 4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선생안의 DB화 작업에는 반드시 방목의 DB를 연계하여 ‘동일인’의 4조 관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본관’의 가문 정보로만 위이던 인물들의 인적 관계망을 온전히 복구하여 연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4조 정보에는 해당 조상들의 관직이 부기된 경우도 많아 특정

28) 기술직 중인들의 관직 독점 양상에 대해서는 방목을 통한 연구에서 누차 지적되어 왔다 (김두현, 2013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경인문화사).

29) 대표적으로 『雲觀先生案』(古大5120-131)에는 관상감의 판관 이상 관원이 수록되어 있는데 처부를 제외한 4조가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어 방목 정보와 상호 호응이 가능하다.

관서에 특정 혈연들이 얼마나 포진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인적 정보에 이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관인 정보이다. 우선 ⑩ 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인물이 文科를 거쳤는지, 혹은 武科를 거쳤는지 아니면 生員進士만 거친 門蔭인지, 이도 거치지 않은 문음인지 혹은 雜科 출신인지 등 그 初入仕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선생안에는 이와 같은 출신 정보가 부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출신은 해당 관원의 관직 시작점이고, 그 시작점에 따라 관로가 확연히 구분되는 현상이 확인되므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중앙관제의 인사이동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출신 정보가 기입된 '방목' 자료를 토대로, 각 관원들의 초입사를 분석한 성과가 대부분이었다.³⁰⁾ 선생안은 이들 출신이 초입사 이후 어떤 관로를 거쳐 갔는지, 이후의 상황을 알려주는 사료로서의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출신 정보에는 시험 종류 즉, 式年試인지 別試인지 增廣試인지의 여부도 기입되어 있고, 시험을 언제 실시했는지, 그리고 해당 인원이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의 정보도 수록된 경우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도 선생안에는 세세하게 기재하기보다 壯元의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부기된 경우가 많아서, 이 역시 방목 자료와의 교차검토를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어 선생안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 할 수 있는 ⑪ 관직명이 있다. 이는 해당 인물이 해당 관서의 어떤 관직에 임용되었는지 알려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라 할 수 있다. 관직 정보에 이어 부기되는 정보로는 ⑫ 품계가 수록된 경우도 있다. 이어 관직명과 함께 핵심 정보라 할 수 있는 ⑬ 前職 정보가 있다. 이는 해당 인물이 어떤 관직에서 해당 관직에 임용되었는지 알려주는 정보로, 官歷을 파악하는 핵심 정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생안에는 전직 정보를 포함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전직일자도 수록하고 있어서 해당 인물이 언제 지금의 관직에 임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재직 당시의 연령과 재직 기간 등의 정보와 직결되어 있다. 또한 전직사유가 적혀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통해

30) 박홍갑, 1995 「조선초기 문과급제자의 분관과 진출」, 『사학연구』 50; 김창현, 1997 「조선초기 문과급제자의 초직」, 『사학연구』 53; 원창애, 2007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의 관직 진출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43 등.

관원들의 이직 사유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전직 정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정보인 ⑭ 移職 정보가 있다. 이는 해당 관직을 마치고 다른 관직으로 이동한 정보이다. 이 역시 관료를 파악하는 핵심 정보라 할 수 있다. 전직 정보와 마찬가지로 이직 일자나 이직 사유가 부기된 경우도 많다. 예컨대 물의를 일으켜 파직되거나, 병으로 사임하거나, 부모의 상을 당하거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적시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조선시대 인사 운영의 실재를 확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 예컨대 선생안 분석을 통한 연구에서 임기가 만료되어 떠난 인물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³¹⁾ 이는 보다 다양한 사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관원들의 체직 사유를 통해 조선시대 관직생활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처럼 전직 일자와 이직 일자 등을 분석하면 자연스럽게 ⑮ 재직기간 정보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선생안에는 ⑯ 최고관직의 정보가 수록된 경우도 있다. 이는 대체로 홍문관이나 이조정랑과 같은 '청요직'에 있는 관직의 선생안에서 주로 확인되는 정보이다. 이들은 엘리트코스를 통해 관료를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관직 역시 정승이나 판서 등 고위급 관료가 많았고, 선생안이 후대에 해당 직종의 위상을 알려주는 목적에서 작성된 측면도 있으므로, 관직 생활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정보가 적시된 것일 수도 있다. 최고관직이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는 관직이면 적시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홍문관 大提學을 역임하거나 관상감의 三歷官을 역임하는 등 해당 관직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관직이면 별도로 기록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신에 오른 경우나 왕실과의 혼인이 있는 경우에도 부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공신과 왕실인척이 중앙정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력의 하나였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선생안에 수록된 정보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들 정보가 모든 선생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장 정제가 잘되어 있는 선생안의 경우 해당 정보가 모두 수록되어 있겠지만 그와 같은 선생안은 찾기 힘들다. 많은 선생안은 ① 성명과 ② 생년, ③ 본관, ⑩ 출신, ⑪ 관직명, ⑬ 전직(전직일),

31) 이성업, 2002 『조선시대 인천부사의 임용실태』 『博物館誌(인하대)』 4.

⑭ 이직(이직일), ⑯ 최고관직이 수록된 경우가 일반적이며, 선생안을 분석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정보이다. 4조 관계라든가, 최고관직과 같은 경우는 특정한 선생안에만 수록되었다. 물론 이들 정보는 대부분 연계된 자료를 활용하면 얻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4조 관계와 같은 경우는 방목을 활용하면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생안 분석에서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가 선생안 DB를 입력한 직후 '방목'과 '족보' 등을 토대로 추가 정보를 확보해 기입하는 것이다. 선생안만을 입력하여 검토하면, 누락된 정보로 인해 분석에 한계가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빠져있는 정보를 메우는 방법으로 주변에 이미 구축된 DB를 활용하여 인적 정보를 추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방목의 4조 정보는 선생안과 어울리는 자료의 하나로 이를 토대로 해당 관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용이하다.

선생안은 지금까지 소개한 정보 외에도 각 선생안을 심층적으로 확인하면 다양하면서 특수한 정보도 획득할 수 있다. 예컨대 『備邊司先生案』과 같이 '兼職' 위주의 선생안은 실적이 나오고 비변사에서 어떤 職務를 담당했는지 기록되어 있다.³²⁾ 예컨대 예검당상인지 유사당상인지 구분되어 있다. 또한 『慶州先生案』은 다른 선생안과 비교해도 매우 독특하다.³³⁾ 여기에는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호장이 기록되어 있고,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경주부윤과 부사가 기록되어 있다.

중인들의 선생안은 4조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고 혈연관계도 명시하고 있어 독특한 점이 있다. 예컨대, 관상감 중인 관원들의 명부인 『雲觀先生案』 역시도 4조의 내력이 기재되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선생안이 수록된 4촌 이내의 혈족이 있으면 반드시 별도로 기재해주었다. 즉, 형제나 부모, 자손 가운데 선생안에 기입된 자가 있으면 누구누구의 형, 누구누구의 자 등이 기록되어 혈족관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³⁴⁾ 또한 『醫科先生案』의 경우에도 4조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물론, 출신여부에 시험관의 명단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³⁵⁾ 이처럼 선생안은 성격

32) 『備邊司先生案』(奎16005).

33) 『慶州先生案』(古 4652.1-3).

34) 『雲觀先生案』(古大5120-131).

에 따라 별도의 특수한 정보를 기입해놓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선생안은 조선시대 특정 관원의 명부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사료이기는 하지만 그 활용에 다수의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 모든 선생안에 균일한 양질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선생안은 조선시대 전체의 해당 관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료가 아니다. 선생안은 대부분 조선후기의 명부만 수록해놓은 경우가 많다. 특정 선생안의 경우에 조선전기의 명단도 함께 수록한 경우가 있지만 이들 기록은 추측에 의한 것이 많고, 연대도 맞지 않는 불완전한 선생안인 경우가 많다. 이는 임진왜란으로 자료가 유실되어 후대인들이 다른 여러 자료를 참조하여 수록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다수 선생안은 임란 이후부터 정리되어 있고, 전직일과 이직일 등 중요 핵심 정보의 경우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수록된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관원 분석은 가능하지만 조선전기와 중기의 분석에는 제약이 따른다.

또한, 선생안 가운데는 매우 불친절한 정보만을 수록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특정 선생안의 경우 이름만 기재되고 어떠한 정보도 없는 경우도 있어서 자료 이용이 한정적인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의정부의 좌참찬과 우참찬의 명단을 기록한 『西壁先生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명을 중심으로 기재하였고, 간혹 가다가 특정 인물에 대한 관직정보만을 적고 있다.³⁶⁾ 물론 참찬에 오를 정도의 인물이면 사실 이름만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다수이기 때문에 부기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 사료를 통해 확보할 수는 있다. 하지만 명단만 남아 있는 선생안의 경우 본격적인 사료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더 나아가, 선생안인데 명단은 없고 서문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宣惠堂上先生案』과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³⁷⁾ 사실 선생안의 서문은 없는 경우도 많아서 서문 자체로 중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명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선생안이라 부르기 어렵고 사료로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

35) 『醫科先生案』(古 7606-1).

36) 『西壁先生案』(규16012, 16013).

37) 『宣惠堂上先生案』(규18163-1).

한 짧은 시기만을 대상으로 한 선생안도 있는데 예컨대 갑오개혁 이후의 관제를 반영한 선생안들이 그렇다. 이들은 물론 역사가 짧은 관직이기에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연대기사료에 양질의 정보들이 넘치기 때문에 이들을 사료로 활용해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처럼, 선생안은 각 기관별, 관직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수록내용의 기준이 없어서 사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도 분명 존재한다. 그렇지만 처음 소개했던 것과 같이, 다수의 선생안은 선생안의 핵심 정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DB를 '방목', '족보' 등과 연계하여 양질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조선시대 관원의 관로 파악은 물론 이를 토대로 한 조선시대 관제 연구에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선생안의 자료적 가치

지금까지 규장각 소장본 선생안의 현황을 검토하고 또 선생안에 수록된 내용들이 어떤 정보였는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규장각 소장본 선생안이 지닌 자료적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규장각은 가장 많은 양질의 선생안이 보유된 기관이다. 규장각에는 어떤 기관보다도 많은 수효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그 사료들 역시 중앙의 핵심 권력기구와 관련된 선생안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자료가 유일본으로 규장각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연대기 등 여타 자료와 비교했을 때에도 전후 관계가 일치하는 등 그 자료적 신뢰도 역시 상당히 높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규장각 소장 선생안은 어떤 기관보다 풍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19개 기관 203종의 선생안의 40%인 80종을 보유하고 있다.³⁸⁾ 이는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보유 수량이다. 더욱이 규장각에는

38)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에 '선생안'을 표제로 하는 사료는 19개 기관에 203종이 산재해 있다. 규장각(80건), 장서각(58건), 국립중앙도서관(26건), 연세대학교(11건), 계명대학교(5건), 부산대학교(4건), 고려대학교(4건), 미국 의회도서관(3건), 중국 요녕

모든 종류의 선생안을 보유하고 있어 그 다양성에서도 압도적이다. 동반 경관직 뿐 아니라, 서반 경관직의 선생안도 보유하고 있으며, 잡직 중인과 관련한 선생안은 물론, 향리와 관련된 선생안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신관제와 관련한 선생안 역시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보다 많은 선생안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규장각 선생안은 단 1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유일본이다. 앞서 살펴본 80종의 규장각 소장본 가운데 타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생안은 『長興鄉座目靑先生案(TK1684/4472)』 단 1종에 불과하다. 그 외의 79종의 선생안은 규장각 내부에 동일본이 소장되어있는 『감대청선생안』, 『(호조)당상선생안』, 『(경주)선생안』 등 3종을 제외하고 76종이 유일본으로 확인된다.

또한, 동반 경관직 선생안은 장서각과 함께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장서각에 소장된 것이 대부분 왕릉·혼전 관련 선생안(14종)이나 왕실 구성원의 교육과 관련된 선생안(10종), 사복시나 종부시, 종친부 등 왕실과 관련된 선생안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규장각에 소장된 것은 의정부와 승정원·사헌부·홍문관·이조·호조 등 국가의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정치권력기구의 선생안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기구에 관한 선생안은 오직 규장각에만 소장되어 있다. 사실 이 점은 규장각 소장 선생안이 지닌 가장 큰 차별성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선생안은 작성시점에 따라 자료적 가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로 명단의 신뢰성은 매우 높다. 임진왜란 이전의 명단은 조선후기에 임의로 작성한 것이 많아서 시기가 맞지 않다거나 인명이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임진왜란 이후의 명단은 대부분 그 신뢰성이 입증되어 있다. 최근 선생안을 주요 자료로 활용한 연구에서 『承政院日記』 등의 연대기 자료와 교차·검토하여 그 신뢰성을 입증한 바 있다.³⁹⁾ 물론 이들 몇몇 선생안 자료 외에도 전수 조사를 통한 각 개별 선생안을 모두 검토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생안은 신뢰할

성도서관(2건), 일본 동양문고(1건)이며, 숙명여대, 건국대, 경북대, 전남대, 경상대, 영남대, 원광대, 성암고서박물관, 독락당에 1건씩이 있다. 밀도 있는 전주조사를 수행한다면 이보다 많은 수효의 선생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9) 나영훈, 2017 「17~18세기 司僕寺 관직 운영의 실제와 참상관의 官路」 『장서각』 38: 박정민, 2018 「함경도 『觀察使先生案』의 명단 검토와 재임 실태」 『전북사학』 52.

수 있는 당대의 실질적인 인사명부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규장각 소장본 선생안은 중앙관서의 관원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장각 소장본 선생안을 모두 DB화 한다면, 4만 6천여 명이 넘는 관인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각 인물마다 평균 5건 이상의 개인·관인 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목과 족보, 읍지 등의 사료를 연계한다면 상당한 수의 조선시대 관인 정보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합 DB 구축은 결국 조선시대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조선시대 사회사와 인물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선생안은 방목·족보 정보와 연계하면 4조 관계와 통혼 관계를 중심으로 관인 상호간의 방대한 '친족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는 조선시대 정치사와 사회사, 혹은 사상적 계보를 추적하는 연구에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특히, 연대기나 문집·족보 등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하급 관료들의 네트워크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향리와 같이 인명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네트워크 역시 검토가 가능하다. 이처럼 선생안은 조선시대 인물 목록 작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관인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서 약 12만여 명에 달하는 인물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⁴⁰⁾ 여기에는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주로 전근대 인물이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조선시대 인물이다. 이 인물 정보는 조선시대 문과와 무과·잡과 등 과거 합격자 명단인 『榜目』 자료가 기초가 되었다. 이 외에 『淸選考』 등 각종 자료가 추가되며 15년의 기간 동안 12만여 명이 넘는 인물 DB를 구축하였다. 이 DB는 약간의 오류도 존재하지만 조선시대 다수의 관인 정보를 수록하여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서나 대중서, 각종 콘텐츠 기획에 활용되며 해당 시대의 연구자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조선시대 인물에 관한 기록들은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의 정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산재해있다. 예컨대 『政事冊』은 18~19

40)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세기 이조의 인사기록부로서 현재 영인본으로 25권이 전해지는데, 관직에 임명된 사람 외에 관직후보자까지 다수의 인물이 실려 있어 막대한 인명 정보를 갖추고 있다.⁴¹⁾ 그런데 이 자료는 아직 데이터로 정제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각종 '선생안'도 중요한 인명 정보를 기록한 자료이다. 특히 규장각 소장 선생안에 수록된 인명수를 대략적으로 검토해보면, 4만 6천여 명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 장서각 선생안에는 1만 7천여 명의 인명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인명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규장각과 장서각의 선생안 인명 기록만 합산해도 6만여 명이 넘는 인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물론 기존에 확인되는 중복 인원도 많겠지만, 지금까지 구축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의 절반에 가까운 수효가 정제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안'의 수많은 인적 정보를 토대로 검토한다면, 각각의 관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실제 운영방식을 이해하고, 이들 관원들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치밀한 실증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각 인물들의 인척 관계를 통한 친족관계와 통혼관계, 즉 조선시대 관인의 친인척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조선시대 당파와 관직, 친족과 관직, 당파와 친족 등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한 개인이 구축하기에는 너무나 큰 희생을 담보해야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연구나 프로젝트를 통한 DB 구축이 필요하며, 이렇게 구축된 DB는 조선후기 정치사나 사회사·인물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규장각 소장 선생안은 조선시대 중앙관서 연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규장각 소장 선생안은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중앙의 핵심 관서를 대상으로 하는 선생안이 주로 소장되어 있다. 즉, 규장각 소장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조선시대 '淸要職' 관원의 관료에 대한 대대적인 네트워크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유일본으로 소장되어 있는 규장각 소장 의정부·사헌부·홍문관·이조정랑과 관련한 각종 선생안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의정부의 舍人과 檢詳은 三司·吏曹正郞과 함께 청요직의 중요한 관직 가운데 하나였다. 그

41) 『政事冊』(奎貴12222-v.1-132).

럼에도 그간 조선후기 사인과 검상의 실태에 대해 검토한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이들 선생안을 통해 사인과 검상의 명단이 확보되면, 이들의 출신과 성분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가능하고 이들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조정랑선생안』 역시 기존 연구가 물론 존재하지만, 선생안에 기재된 여러 정보를 통해 이조정랑의 성격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들이 이른바 '사림정치'의 중핵이 되었다가 폐기되었던 정치적 부침에 대한 실증도 가능할 것이다.⁴²⁾ 마찬가지로 사헌부의 각종 선생안 역시 이러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홍문관의 『玉堂先生案』은 현재 방대한 인명이 남아 있는데, 이들은 조선후기 정치를 이끌어간 주요한 인사들을 망라한 것이다. 이른바 '弘文錄'에 올라 정치일선으로 나아간 정치엘리트들의 명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선생안의 DB가 구축되면 기존 연구 성과와 함께 조선후기 정치세력에 대한 실증적 전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청요직' 직군에 대한 방대한 명단은 규장각 소장본만이 지닌 중요한 자료적 특징으로서 규장각 소장본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려준다.

여기에 더해 방대하게 남아 있는 『備邊司先生案』 역시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사료이다. 비변사는 조선후기 의정부를 대신해 국정을 총괄한 기구로 알려졌다. 『비변사선생안』은 여기에 포함된 인원들의 명단이 실려 있다. 즉, 조선후기 국정을 총괄한 인원들을 시기적으로 면밀하게 추출하여 출신과 성분, 관료와 인적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라 할 수 있다. 비변사는 조선후기의 『登壇錄』 등 5군영 장수들의 명단과 함께,⁴³⁾ 문무에 걸쳐 조선후기 권력을 장악했던 인사들에 대한 방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혜청의 선생안 역시도 일부지만 존재하는데, 비변사와 선혜청, 5군영은 '경국대전체제'를 벗어난 관서였지만, 조선후기의 정치와 재정, 군사와 관련된 핵심 기구였

42) 남지대는 청요직의 관원을 선생안 자료를 통해 추출하고 이들 엘리트 집단을 추출하였다 (남지대, 1992 「조선후기 당쟁과 청요직」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다만 17세기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선생안을 치밀하게 DB화하여 다루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이들 선생안의 DB화가 필요하다.

43) 등단록은 현재 『登壇錄』(규3901) 등 다수가 존재하며, 이와 함께 『國朝將臣錄』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다.⁴⁴⁾ 이들 기구의 명단이 남아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모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비변사와 선혜청, 훈련도감의 명단을 함께 DB로 구축하여 검토한다면 이들 간의 상호관계와 조선후기 정치세력과 그 부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

한편, 조선시대 중앙관서와 관직 운영에 대한 연구는 주로 ‘清要職’이라 일컬어지는 삼사 등의 관료에 집중되었다. 이는 이들이 정치운영의 핵심으로 조선시대 관제 운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조선의 중앙관제는 이들 대부분 文科 출신으로 구성된 청요직만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보다 훨씬 많은 수효의 관원들은 生員進士 출신의 문음이거나 이도 거치지 않은 문음, 즉 문과가 아닌 非엘리트 출신 관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최근 전생서 참하관을 연구한 결과에서 이들이 대략 법전의 규정같이 1년가량 근무하며 종9품에서 8품, 7품으로 단계적으로 승진하며 참상관의 관료로 걷고 있던 여정을 확인하였는데, 이 연구 역시 『典牲署先生案』 자료를 통해 관료를 실증할 수 있었다.⁴⁵⁾ 물론 이는 한 관서에 국한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를 참하관 전체 관료로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포함한 다양한 참하관 관서의 연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는데, 규장각에 소장된 『太倉先生案』은 ‘廣興倉’ 관원들의 관로를 알려 준다는 점에서, 非문과출신이자 非청요직인 참하관과 참상관의 관료에 대한 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료이다. 이처럼, 규장각 소장 전생안은 중앙 관서에서도 비청요직 관료의 관로 파악도 가능하다.

한편, 여기서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규장각에는 다양한 전국의 ‘邑誌’가 소장되어 있고, 다수의 읍지에는 읍선생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읍지에 수록된 읍선생안의 대대적 구축이 가능하다면 중앙과 지방의 관직 이동에 관한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개별 단위로 연구되었던 수령과 관련한 선생안의 종합적 DB 구축이 완료된다면, 이와 함께 중앙관서의 관원 간

44) 비변사와 선혜청은 『경국대전』에는 기재되지 않는 임시기구로, 임진왜란 직후 상설기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속대전』 단계에서는 법전에 기재되는 기구이지만 본래는 경국대전체제에서는 벗어나 있던 제도였다.

45) 나영훈, 2017 「17~18세기 典牲署의 관직 운영과 參下官의 官路」 『동양고전연구』 69.

의 관직 이동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고, 이는 결국 조선시대 중앙관제의 운영과 직결되어 검토할 수 있다. 이처럼, 규장각 소장의 선생안은 종합적 DB 구축을 통해, 조선시대 중앙관제에 대한 실증적 운영의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조선시대 선생안이 정치제도사 연구에서 차지하는 자료의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진했던 이유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자료가 산재되어 현황 파악이 어렵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선생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으며 중앙의 핵심적인 관서의 선생안을 보유한 기관인 규장각 소장본부에 현황 검토를 실시하고 그 자료적 가치에 대해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선생안의 현황과 분류'라는 주제로 규장각 소장 선생안 80종의 현황을 제시하고 각 자료의 성격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경관직 동반 선생안으로 의정부(11종)와 이조·호조(8종), 홍문관(4종), 사헌부(4종), 승정원(3종), 사학(3종), 기타(5종)의 선생안을 소개하고 대부분 청요직 아문의 선생안이 소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관직 서반 선생안으로 비변사와 선혜청, 선전관청, 별군직청의 선생안을 소개하고 이들 사료 역시 어디에도 없는 유일본 선생안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외관직 8종과 잡직 7종, 신관제 9종, 향리 3종 등 규장각 소장본 선생안의 현황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규장각이 유일본 자료를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이자 대부분 '청요직' 중앙관료의 선생안을 소장한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선생안의 수록 내용과 자료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선생안에 수록된 정보로서 ① 개인정보, ② 친족정보, ③ 출신정보, ④ 관직정보가 대표적임을 제시하였다. 이들 정보를 통해 조선시대 관인의 성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DB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만 여기에 더하여 이들 선생안에 수록된 관인 정보를 방목이나 족보 등 여타 인적 명부와 연계하여 검토한다면, 조선시대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효율적이란 점도 제시하였다.

한편, 규장각에 소장된 선생안 가운데 특별한 내용을 수록한 선생안 역시 별도로 소개해주었다. 예컨대 중인 선생안에 수록된 '4촌 이내의 혈족 수록 여부'나 경주선생안에 포함된 신라시대 호장부터의 내력이 실린 선생안 등 특수한 선생안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규장각 소장본 선생안의 자료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첫째, 규장각은 어떤 기관보다 많은 선생안이 소장되어 있고, 한 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일본 사료였으며, 대부분의 선생안은 자료적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무엇보다 규장각만의 가치로서, 중앙의 핵심관원 명단을 파악할 수 있는 기관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규장각 소장본 선생안을 DB화하면 모두 4만 6천명에 이르는 새로운 관인 명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결국 이미 구축된 인명 DB와 함께 조선시대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큰 기여를 하여 조선시대 사회사와 인물 연구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방목을 중심으로 12만여 명에 달하는 인적 정보를 구축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의 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규장각 소장본 선생안은 무엇보다 조선시대 중앙관서 연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규장각 소장본은 어떤 선생안보다 '청요직' 관료의 관료와 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중앙정치체도와 그 안에서 역할했던 수많은 관료들의 권력 관계를 이해하는데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모든 기관에 소장된 선생안을 살피지는 못했고, 선생안과 유사한 성격의 자료인 '題名錄'이나 '官案'과 '政案' 등은 물론 『登瀛錄』, 『登壇錄』, 『政事冊』, 『淸選考』, 『名世叢考』 등 다양한 관직의 명단을 묶은 종합적 성격의 인사기록까지 모두 포괄하여 검토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이들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기에는 그 분량도 너무 많은데다가 관안이나 정안·정사책·청선고 등의 각 사료는 선생안과는 조금씩 다른 성격을 지닌 자료라는 점에서 일괄하여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주제어 : 선생안(先生案), 규장각(奎章閣), 정치제도, 인적 네트워크, 제명록(題名錄), 정사책(政事冊), 관료제

투고일(2019. 4. 25), 심사시작일(2019. 5. 13), 심사완료일(2019. 5. 23)

<Abstract>

The Present Situation and Data Values of 'The list of Government official(先生案)' in Kyujanggak(奎章閣)

Na young hun *

This paper is written for the purpose of checking the status of The list of Government official(先生案). Accordingly, I will conduct a status review from Kyujanggak(奎章閣), which has the largest collection of The list of Government official, and review the data values.

Chapter 2 presented 80 types of The list of Government official in Kyujanggak and identified the character of each data. As a result, Kyujanggak confirmed the character of the institution that owns the largest number of the only data and most of the organization that owns The list of Government official for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Chapter 3 describes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ist of Government official. The list of Government official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family information, Chulsin(出身; its mean pass the state examination) information, and government office information. These information provided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 database of government officials during the Joseon Dynasty.

Chapter 4 presented the data value of the Kyujanggak collection. First, Kyujanggak has more the list of Government official than any other institution and was mostly the only data. Most of the list of Government official also had very high data credibility.

Second, building the list of Government official at Kyujanggak as a database could bring the total number of new officials to 46,000. This, along with the already established database,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building of human networks in the Joseon era. It can also lead to expansion of social and person research during the Joseon Dynasty.

Third, the list of Government official, housed in Kyujanggak, can, among other things,

* Research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be used as a key source of research for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list of Government official of Kyujanggak can establish a network of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more than any data. Through this, it can be used as empirical data to understand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political system and numerous officials during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 The list of Government official(先生案), Present Situation, Kyujanggak (奎章閣), political system, human networks, bureaucracy